



International Certification Registrar Ltd. / (주) ICR

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 3 로 7 번길 112

Tel : 02-6351-9001

Fax : 02-6351-9007

홈페이지 : www.icrqa.com

Doc. No / 발행번호 : ICR S-17-04-27-002

Date / 발행일자 : 2017 년 4 월 27 일

To / 수 신 : ICR 심사원

Attn. NO / 참 조 : 내부직원

Subject / 제 목 : 인증기관 전환 심사에 대한 件

1.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ICR의 인증등록기관 전환 절차(QP-13)에 따라 인증기관 전환 심사 시 ICR 은 고객에 대한 전환 자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,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공 되어야 합니다.

- 다 음 -

연번	검토 내용	검토 자료
1	고객의 인증된 활동이 ICR의 인증범위에 해당됨	인증서 상의 인증범위
2	전환 이유	고객에게 설문
3	인증/등록의 유효성 및 미해결 부적합 여부	인증서의 유효일 확인, 최근 심사 부적합 보고서 및 시정조치 자료
4	최근 심사 보고서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미해결 부적합에 관한 고려. 이러한 고려는 수기노트, 점검표 인증프로세스에 대하여 모든 다른 이용 가능한 관련 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.	최근 심사 보고서, 부적합 보고서, 시정조치 자료
5	접수된 불만 과 취해진 조치	고객에게 설문
6	현재 인증/등록 주기에서의 단계	최근 심사 보고서, 인증서

3. 이에 따라, 전환 **신청 시 유효한(만료일이 지나지 않은) 인증서, 최근 심사 보고서, 부적합 보고서,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자료**가 반드시 함께 접수 되어야 합니다.

4.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, 앞으로도 ICR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ICR 認 證 院
代表理事 金 德 龍

